

사업장 휴게시설 설치·운영 가이드 마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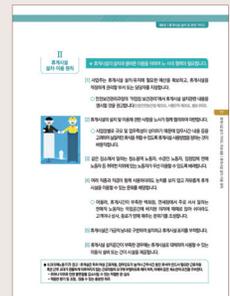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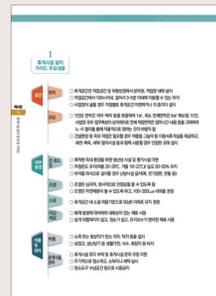
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
2018.8.6.

고용노동부는 사업장 내 최소로 확보해야 하는 휴게시설 크기 등을 규정하는 '사업장 휴게시설 설치·운영 가이드'를 마련하고 산업현장에 배포하였다. 최근 백화점·면세점 등의 판매노동자와 청소·경비 노동자들의 열악한 휴게시설 문제가 제기되었던 만큼 이번 가이드에서는 ▲휴게시설 설치·이용 원칙 ▲휴게시설 설치대상과 위치·규모 ▲휴게시설의 환경 ▲비품 및 관리 등 휴게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담고 있다.

휴게시설의 면적은 1인당 1m², 최소 6m²를 확보해야 한다. 또한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고자 냉난방·환기시설 등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며, 옥외 작업장의 경우 여름철에는 폭염에 대비하기 위한 냉방시설을, 겨울철에는 한파에 대비한 난방시설을 각각 설치해야 한다.

또한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도록 제시된 조명과 소음 기준을 준수하고, 등받이 의자와 탁자, 식수, 화장지 등 필요한 비품 등을 구비하도록 하였다. 휴게시설의 배치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었는데, 휴게시설은 최대한 작업장 내에 설치하여야 하며 공간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100m 이내 또는 걸어서 3~5분 안에 이동할 수 있는 곳에 마련하도록 하였다.

고용노동부는 “노동자가 신체적인 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휴게시설은 필수적으로 갖춰져야 할 최소한의 노동조건”이라고 강조하면서, “이번 가이드가 현장에서 준수될 수 있도록 근로감독관과 민간 재해예방전문기관을 통해 운영 실태의 지도·점검 또한 실시할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


사업장 휴게시설 설치·운영 가이드

자료: 고용노동부(2018), 「사업장 휴게시설 설치·운영 가이드」, pp.16-17.
(http://www.moel.go.kr/news/notice/noticeView.do?fbbs_seq=20180800115)